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3.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3월 10일

나. 발의자: 임현호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5년 3월 20일

라. 상정일자: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3. 2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임현호 의원)

가. 제안이유

○ 병역명문가 및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주차장 이용료를 감면해줌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구민의 노고에 감사하고,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별표1 비고 중 면제 대상 추가(별표1 비고 제25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의 주차비 할인율을 확대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차비를 감면하여 성실히 국토방위의 임무를 다한 구민을 예우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1은 병역명문가의 주차비 할인율을 상향(20%→30%)하고, 장기복무제 대군인의 주차비 감면(30%)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검토 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주차비 할인율 확대 ▲장기복무제대군인 주차비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
- 먼저, 서울시 타 자치구의 병역명문가 주차비 할인율을 살펴보면, 30%이상 할인하는 자치구는 14개로 절반 이상에 해당되며, 할인율을 20%→30%로 확대하는 것은 타 자치구들이 정하는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타당하다고 보임.
- 한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제3항에 따라 지자체는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지니며, 2022년 9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비를 감면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00
----------	-----

발의연월일: 2025. 3. .

발의자: 임현호、정선희、유승용
이성수、남완현 의원(5인)

1. 제안이유

병역명문가 및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주차장 이용료를 감면해줌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구민의 노고에 감사하고,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1 비고 중 면제 대상 추가(별표1 비고 제25호)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1 비고 제15호 중 “20”을 “30”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25호를 제26호로 하며, 제26호를 제27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원, 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월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200,000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100,000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80,000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50,000	-	100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 노상주차장 시간주차 요금(1급지)은 일 3만6천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 5급지 노상 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한다.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 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접용 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급지: 경인로·선유로·노들로·도림로 및 여의도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접하고 있는 주차장으로써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 2급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 중 상업·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3급지: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4급지: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중 상업·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5급지: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3) 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한정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사.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 할 수 있다.
4.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 · 야간주차요금의 정수방법 · 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시간 및 주차장 공유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공영주차장에 최초로 입차한 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에 출차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이를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7.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8. 구청장은 모범 ·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9. 구청장은 주한외교관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0.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참여확인증을 유효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 1인 1회에 한정하여 2,000원을 할인할 수 있다.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거나 구매한 사실이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해 확인된 차량이 공영주차장(전통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에 주차하고 전통시장등에서 발행한 주차권 등을 제시한 경우에는 최초 2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2.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동이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3. 구청장은 개인택시 · 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 · 노외 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14. 구청장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를 위해 방문한 경우 구에서 운영하는 지정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최초 30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16. 구청장은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화물자동차의 상품 하역주차 시 최초 30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7.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는 지정된 주차면에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요금의 100분의 5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18. 동 방역 및 동 방범순찰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내 동의 지정된 구역에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단, 사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동별 각 1대에 한한다.
1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20. 구청장은 효행문화 확산을 위해 어르신복지카드(백세카드)사업에 참여중인 유품업소의 대표자가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2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3. 영등포구 공무수행 차량과 영등포구 주최·주관 행사 운영 또는 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임시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2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26.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7.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